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4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8월 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 1. 제안이유

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연임규정을 완화하여 역량 있는 시민감사관의 지속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 가운데 ‘1회에 한하여’를 ‘감사 역량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두 차례만’으로 수정(안 제4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별첨 5
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(외부전문가 등의 참여)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감사계획의 수립)
-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제2조의3(학교자율 종합감사)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)

다. 협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 1
- 입법예고(2019. 6. 28. ~ 7. 22.) 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
  - ※ 법제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연임 시 절차를 명확히 함
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○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(별첨 4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1회에 한하여” 를 “감사 역량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두 차례만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 1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임기 및 신분보장) ①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고,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4(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)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임기 및 신분보장) ① ----- ----- ----- <u>감사 역량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두 차례만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【별첨 2】

###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‘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’에 해당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비용추계 해당 없음

#### 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주무관 김승진 (02-3999-144)

【별첨 3】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제4조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(서울특별시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4조(임기 및 신분보장) 중 제1항의 ‘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’ 중 ‘1회에 한하여 연임’을 ‘2회에 한하여 연임’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요청</li> <li>- 요청 사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임기 연장은 현재 시민감사관을 위한 특혜로 비취질 수 있으며,</li> <li>· 능력 있는 감사관이 두루 선발되어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함에도 동 조례에는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음. 능력이 부족한 감사관이 임용될 경우 서울교육에 그 피해가 미칠 수도 있음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반영</li> <li>-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 소지가 없고 능력 있는 시민감사관 선발을 위하여 기존 위촉 시민감사관 재위촉 시 능력과 실적 평가를 통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, 재위촉에 관한 사항은 계획(안)을 교육감 결재 후 시행하므로 동 조항을 유지함.</li> </ul>

※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‘2회에 한하여’를 ‘두 차례만’으로 변경함

【별첨 4】

<b>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</b>				
관리번호	2019A서울교육014			
정책명	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감사관		
	담당자명	김승진	전화번호	02-399-9144
담당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
	부서명	정책안전기획관		
	담당자명	민경식	전화번호	02-399-9310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19년 07월 01일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19년 07월 19일			
<p>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9년 07월 19일</p>				

## 【별첨 5】

### 관계법규

#### ■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- 제27조(외부전문가 등의 참여)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·보건·환경·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.

#### ■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19. 5. 14.] [대통령령 제29764호, 2019. 5. 14., 일부개정]

- 제11조(감사계획의 수립) ① 감사기구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감사사항
  2.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
  3.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
  4. 감사의 범위
  5.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
  6.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
-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## ■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」

[시행 2018. 10. 19.] [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198호, 2018. 10. 19., 일부개정]

제2조의3(학교자율 종합감사) ① 교육감은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부 감사관,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하는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자율 종합감사 대상기관, 감사방법, 결과처리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③ 외부전문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10. 19.]